

對外貿易管理規定 改正에 따른 所要量制度 解説(I)

徐 鐘 源*

1. 所要量證明制度의 意義

所要量證明書란 그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對應輸出을 이행하는 데 所要된 原資材의 양을 계산하고 同內容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관한 諸般事項은 對外貿易法 第23條, 同法施行令 第42條 및 對外貿易管理規定 第5章 第3節에서 定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定한 所要量運營에 관한 사항을 所要量證明制度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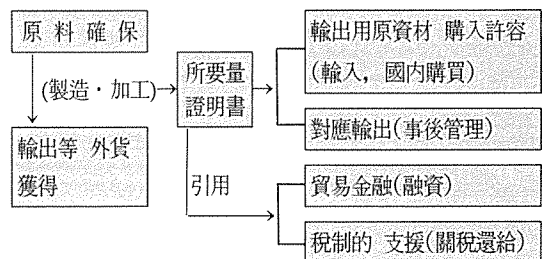
對外貿易法 등에서 소요량증명제도를 定하고 있는 目的은 對外貿易法 第18條 및 第19條에서 輸出入公告 또는 別途公告 등에서 輸入이 제한되고 있거나 輸入先多邊化品目에 해당될지라도 輸出 등 外貨獲得을 위하여 그 原資材를 輸入하는 때에는 輸入을 許容함에 있어, 輸出用原資材로 輸入許可(承認)할 때 輸入을 허용할 原資材의 範圍, 種類 및 數量을 計算, 確認하는 根據資料로 사용하고, 輸入後 對應輸出을 이행한 때에 이행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本來의 目的이다.

즉, 公安, 道德, 風俗을 해치거나 不要不急한 奢侈性 消費財品目은 輸入을 억제하고 國內 1次産業의 誘致 및 基幹産業의 保護育成을 위

한 目的과 國家間 貿易不均衡의 調整을 目的으로 輸入을 규제하는 對象物品을 定한 規定이 輸出入公告와 別途公告이다. 이때 수출용 원자재로서 輸入을 허용하는 범위와 대응수출 이행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該當原材料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계산하여 확인하는 資料로서 所要量制度가 必要하게 된 것이다.

所要量證明에 관하여는 對外貿易法 第23條 등에서 定하고 있는 所要量證明制度를 引用하고 있다. 따라서 소요량증명제도는 그 法에서의 施行目的뿐만 아니라 輸出業體를 支援하는 각종 制度에서도 이의 支援範圍를 계산하는 資料로 사용하고 있는 一元化된 制度라고 하겠으나, 그 목적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로서는 所要量證明制度의 전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 업무목적에 적합한 所要量證明制度가 될 수 있도록 制度的 補完措置로 보충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關稅廳 還給課

2. 還給制度와 所要量制度

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第8條 第1項에서는 『對外貿易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하여진 輸出物品別 原料의 範圍, 品目 및 數量에 해당하는 輸出用原材料를 輸入하는 때 納付한 關稅 등을 還給한다』라고 하여, 對外貿易法에서 정하고 있는 所要量證明制度를 還給特例法에서도 適用하도록 하였다.

所要量證明業務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광범위한 제품의 분야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原材料 및 製品의 特性이나 生産工程過程에 따른 商品學的 專門知識이 요구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最尖端素材나 製品를 접하게 되는 업무이다. 또한 消費者嗜好度의 급속한 변화, 기술개발에 따른 工程變更 및 新開發品 증가, 輸出伸張 등으로 그 취급되는 범위가 날로 복잡해가고 있고 업무량도 증가되고 있어 所要量制度의 運用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소요량증명 발급업무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소요량발급제도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製品別로 實績에 의한 平均所要量을 근거로 基準所要量을 定하여 告示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산, 발급할 수 있는 基準所要量 告示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나, 生産業體의 生産施設, 技術 및 熟練度 등에 따라 業體別 使用量에 차이가 있고 심지어 技術開發 또는 工程變更 등으로 인하여 즉시 그 사용량이 변하고 있는 결점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급업무는 이를 補完하는 措置로서 還給特例法施行令 第8條 第2項에서 “基準所要量을 適用하여 關稅 등을 還給한 結果가 현저하게 不合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業體別 實際使用量을 調査하여 이미 환급된 금액을 精算하고, 그 결과를 告示機關에 通報”

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환급제도에서는 소요량증명에 관한 것은 대외무역법상의 것을 적용하되 만약 基準所要量이 實際使用量과 현저하게 차이가 생길 때에는 實際使用量을 調査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實際使用量으로 계산된 還給金이 사실상의 환급금이 되도록 하여 還給制度上 還給金決定은 實際使用量을 基準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수출업체는 基準所要量이 告示된 品目인 때에는 事전에 管轄市(道), 工業試驗所, 輸出自由地域管理所 또는 管轄稅關 등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의 現場調査 등의 방법으로 工程別單位所要量을 策定받은 다음 所要量發給 具備書類를 근거로 確定所要量을 發給받을 수 있으므로 非告示品目인 때에는 所要量證明書를 發給받는 節次가 번거롭고 많은 時間이 所要되는 不便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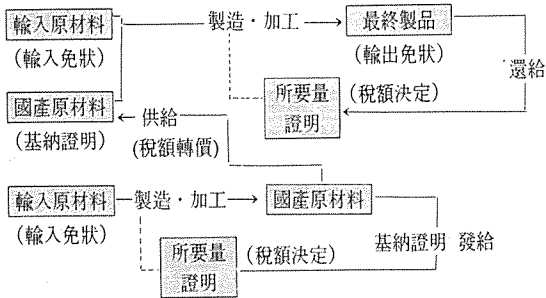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關稅還給制度는 이를 簡素化한 制度로서 中小企業에서 수출하는 少額輸出物品에 적용하는 少額輸出簡易定額制度和 업체별 平均환급액에 의하는 業體別品目別定額制度를 실시하여 환급신청시에 所要量證明書가 不必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적절한 환급금의 결정이란 측면에서 볼때 업체선정과 적용품목에 한계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소요량 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個別還給制度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對外貿易法 등에서도 소요량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절한 소요량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수출업체가 스스로 所要量計算書를 作成할 수 있도록 하는 自體所要量發給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나, 業體의 信義誠實에 의존하는 제도이고 소요량을 책정할 수 있는 自體內部的 시스템(電算) 및 連結體制를 갖춘 업체에만 적합하다는 기준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실제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평균소요량을 책정한 후에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가”를 확인하는 事後管理의 必要性, 즉 사후적 조치라는 문제가 뒤따른다.

還給制度에서 還給金を 決定하는 基本原則은 業體別 平均實際所要量에 의하므로 그 概念과 부합되지만 업체가 平均所要量을 精確하게 策定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方法問題와 策定內容을 確인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問題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還給의 基本흐름圖



3. 所要量策定 및 調査

가. 單位所要量策定

(1) 單位所要量の 意義

기준소요량이란 告示하지 아니한 品目(非告示品目)에 수출업체의 신청에 따라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업체의 수출물품 1單位數量을 生産하는 데 所要된 原料의 範圍, 品目 및 所要量을 確인하는 것을 말한다.

(2) 單位所要量을 策定하기 위하여 調査하는 內容

當該製品을 生産하는 製造工程別 工程을 파악한 後에 그 工程別로 損耗率, 損耗狀態와 其 發生原因 또는 原材料別로 配合되는 比率 등을 최소한 調査하게 된다.

(3) 單位所要量을 策定하는 方法

다음 방법 中에서 發給機關의 長이 가장 妥當하다고 判斷되는 方法으로 한다. 이때 當該業體가 當該品目에 대하여 附加價值稅法 第35條, 所得稅法 第201條 第1項 및 法人稅法 第6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의 生産收率을 勘案하여 策定할 수 있다.

(方法)

- | | |
|-----------------------|--------|
| ① 現場調査 | ② 文獻調査 |
| ③ 實物 및 카다로그 調査 | |
| ④ 申請者 提示資料에 의한 調査 | |
| ⑤ 類似品의 所要量適用 | |

나. 實際使用量調査

(1) 還給制度에서 實際使用量의 調査가 必要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還給特例法施行令 제8조 제2항에서 『技術開發 등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對外貿易法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基準所要量을 적용하여 關稅 등을 還給한 結果가 顯著하게 不合理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業體別實際使用量을 調査하여 還給金額을 精算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顯著하게 不合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 實際使用量이 基準所要量보다 ±2% 以上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만, 2個以上의 基準所要量 告示品目을 相互 適用하여 所要量을 算出하는 때에는 ±3% 以上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輸出品의 製造·加工時에 經濟的 價値가 있는 副産物이 발생하는 경우(副産物의 價格이 副産物 發生에 所要되는 原材料의 價格에 비하여 3% 以上인 경우에 한한다).
- 둘째, 非告示品目의 所要量證明書에 대하여

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不合理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所要量을 調査, 確認할 수 있다.

세째, 所要量自體管理企業과 같이 業體 스스로가 소요량을 책정·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所要量計算書로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所要量證明書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의 所要量計算書는 1年單位로 算出한 平均實際所要量에 의하여 計算되고 適用時期는 每年 事業年度 終了後 3月이 經過한 때로부터 輸出免許되거나 國內供給되는 物品에 適用한다.

이러한 업체가 關稅還給時에 제출하는 所要量計算書에 대하여도 당해업체의 1年單位로 算出한 實際所要量이 精確한 策定方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를 調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還給과 관련하여 實際使用量을 조사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對外貿易法 第23條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이 현저하게 不合理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요량계산서 발급업체 포함)

둘째, 告示되지 아니한 所要量證明書가 현저하게 不合理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째, 對外貿易管理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所要量自體管理企業이 自律적으로 算出한 1年單位의 平均實際所要量에 대하여 精確하게 算出되었는지의 여부.

(2) 實際使用量의 調査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製造場中心으로 조사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의 生産結果에 대한 實際使用量을 事後에 確認하는 것이므로, 당해업체의 原料, 製品 및 副產物에 대한 受拂事項(전산자료 및 결산보고서 작성자료 등 내부자료)을 중심으로 “製品別 平均實際所要量”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당해업체의 제시자료에 의한 신고사항

을 근거로 하여 실제사용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지만, 同種物品이나 類似物品을 생산하는 업체간에 比較·分析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書式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所要量調査는 工程段階別로 구분하여 가장 合理的이고 精確한 方法을 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實際使用量의 調査는 製品 1單位當 實際使用量(또는 單位所要量)을 調査·確認하는 것이지만 經濟的 價値가 있는 副產物이 發生하였을 때는 副產物發生量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調査過程에서 환급받은 原材料의 種類 및 規格이 實際所要되는 原材料의 種類 및 規格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認知하게 되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實際使用量의 調査時에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첫째, 그 調査의 취지를 설명한 協助公文에 의하며,

둘째, 調査로 인하여 業體가 生産하는 計劃이나 施設에 被害가 없도록 하고,

세째, 業體別로 原資材 및 製品의 受拂形態 및 管理狀態가 일정하지 않아 調査·確認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통일된 調査書式으로 작성하되,

네째, 製品의 範圍, 原料의 範圍, 不良品 및 副產物의 範圍에 대한 일치된 개념에서 精確한 算出方法으로 確認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하는 範圍에 대한 概念과 算出方式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本調査段階와 調査終結段階의 調査書式과 作成要領에서 설명되고 있다.

① 物品別 範圍設定

㉠ 製品生産量의 範圍: 附加價値稅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의 生産收率 산출시에 취급하는

제품생산량으로 한다.

㉠ 原料實使用量의 範圍：製造投入量 + 期初在工量 - 期末在工量 = 原料實使用量

(製造投入量)…製造에 投入된 양으로서 工程中에 발생한 屑物이 원료로 재사용되는 수량은 포함하지 아니함.

(期初在工量, 期末在工量)…工程中에 있는 在工品을 말하며 원료로 재사용되는 期初, 期末屑物은 期初, 期末在工品에 合算記載

㉡ 不良品の 範圍：“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에서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예; 正常製品販賣價의 30% 이하 판매제품).

㉢ 副産物의 範圍：工程中에 발생한 屑物 또는 附隨的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廢棄 이외의 用途에 쓰이는 것).

輸出品 製造過程에서 直接 發生한 副産物

$$\frac{\text{副産物의 量} \times \text{副産物의 價格}}{\text{原材料의 量} \times \text{原材料의 價格}} > 3\%$$

副産物을 加工하여 사용하는 경우

$$\frac{\text{제2제품 出庫價格}}{\text{제2제품 製造總費用}} > 1인 副産物$$

② 單位當 實際使用量 算出方式

㉠ 個別의 方法：輸出品 每件別 投入原材料量과 製品生産量 관계

$$\text{單位所要量} = \frac{\text{原材料投入量}}{\text{製品生産量}}$$

㉡ 總量의 方法：一定期間(주로 事業年度의 會計決算期間) 중 原料實使用量과 製品生産量 관계

$$\text{單位當 實際使用量} = \frac{\text{原料實使用量}}{\text{製品生産量}} = \frac{1}{1 - \text{損耗率}}$$

(製品生産量)…會計帳簿上 當期生産量으로 不良品(副産物 포함)은 제외한 수량 (原料實使用量)…製造投入量 + 期初在工品 - 期末在工品 (在工品)…工程中에 있는 물품을 말하며 원료로 재사용되는 屑物은 在工品에 合算

※ 單位所要量의 策定時에는 國稅廳에 보고된 “生産收率 및 原單位報告書”의 生産收率을 감안하여 策定한다.

(4) 單位所要量 策定時에 國稅청에 보고되는 당해업체의 生産收率을 감안하게 되어 있으나, 生産收率을 계산하는 범위·대상이 總括的인 점이 있고 主原料로만 국한되는 등 所要量策定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의 事務處理規定과 作成要領에 대하여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므로 要約된 內容을 열거해 본다.

①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

㉠ 申告對象：輸入金額이 年間 1백억원 이상인 製造業

㉡ 申告除外品目：防衛産業物資, 造船業, 木材家具(申告對象品目과 申告除外品目を 同時製造할 때 申告對象品目は 신고)

㉢ 申告資料의 活用：製造業體의 原材料使用量에 대한 製品生産量의 比率을 산출하여

㉠ 同種業體間 상호 比較分析管理하여 不誠實業體에 대한 課稅基準值 활용

㉡ 商品學的·技術的 側面의 調査技法을 開發·發展시켜 신고의 誠實度判定 및 稅務 調査資料로 활용

㉢ 申告制度의 目的과 機能：製造業體의 生産量, 즉 製造外形을 정확하게 기강하도록 유도하여 諸稅脫漏를 사전에 예방하고 事後監督을 하는 과학적 장치

㉠ 事前牽制機能；生産收率을 비교분석 검

토함으로써 外形原價의 精確한 計算을 尤도하여 脫稅審理의 事前抑制

⑥ 事前監視機能：調査對象者選定 및 審理資料로 活用하여 不誠實業體에 對한 事後管理 및 調査時 동종업체간 比較분석으로 收率不良業體의 原因을 糾明하는 등 各種 調査資料로 活用

② 生産收率 및 原單位種目

㉠ 生産收率種目：직물, 편물, 합성수지, 철강제품, 피혁, 화장품, 지류, 요업제품, 목재, 화공약품, 고무제품, 의약품, 식품 및 사료 등...

㉡ 原單位種目：직물봉제품, 신발제품, 기계류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피혁 및 모피제품, 기타 제품

③ 生産收率 關係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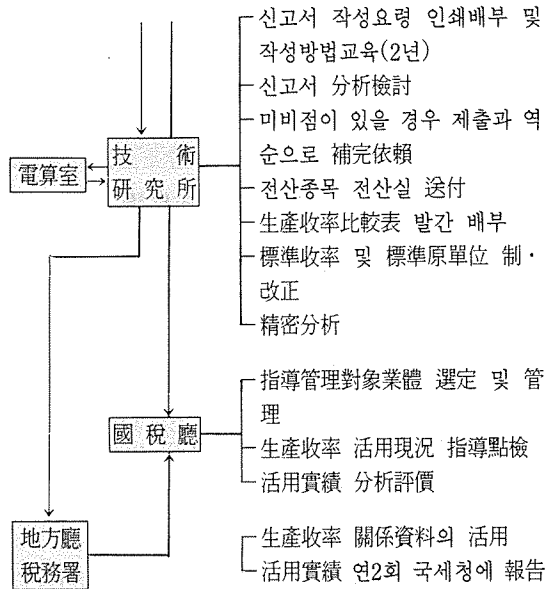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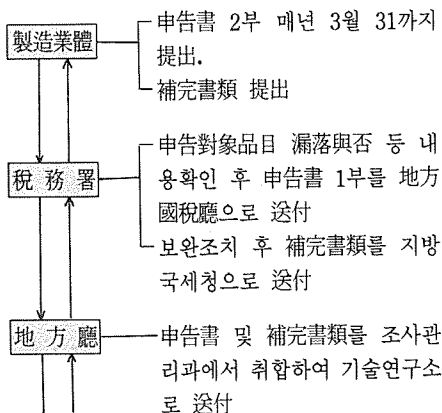
㉠ 生産收率比較表

(內容) · 製品名 및 主原料名

-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3개년간의 생산수율 또는 주요 원료별 원단위
- 업체별 제조의형대비 품목별 매출액

(活用) · 申告指導資料 및 書面分析資料

㉡ 生産收率業務 흐름圖



㉡ 生産收率 및 原單位 事務處理規定：“生産收率”이라 함은 原材料 또는 主된 原材料投入量에 對한 製品生産量의 百分率을 말한다. “原單位”라 함은 單位當 製品의 生産을 위하여 投入되는 各 原·副材料의 數量(重量 또는 體積)을 말한다.

※ 生産收率

$$\text{總量收率(\%)} = \frac{\text{製品의 總重量 또는 부피}}{\text{投入된 原材料總重量 또는 부피}} \times 100$$

$$\text{理論收率(\%)} = \frac{\text{순도 100\% 환산 製品生産量}}{\text{理論生産量}} \times 100$$

$$\text{※ 原單位} = \frac{\text{各 原料의 使用數量(중량, 용량 또는 개수)}}{\text{製品의 數量(중량, 용량 또는 개수)}}$$

㉡ 申告書提出：稅務署長은 申告書提出 對 상업체에 對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製造장별로 2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 ①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 ② 生産收率 및 原單位表
 ③ 製品受拂明細表 ④ 原料受拂明細表
 ⑤ 製造工程圖 및 特記現況表 ⑥ 副産物受拂明細表
 ⑦ 其他 필요한書類

④ 生産收率 및 原單位表 作成要領

㉑ 製品生産量：會計帳簿上 單位에 의한 當期生産量(제품수불 명세표의 장부상 생산량)을 제품의 기준단위로 환산한 양을 기재하되, 동일한 제품에 數個規格이 있을 때는 반드시 合算하여 合計된 生産量으로 記載(제품수불명세표에 제품규격별로 작성 合계한 기준단위 생산량과 일치하여야 함).

* 不良品은 製品生産量에서 제외한 數量임.

㉒ 不良品生産量：正當製品 販賣의 30% 以下(할인판매는 제외)로 販賣되는 製品의 수량을 말하며 製品의 기준단위로 기재

㉓ 副産物生産量：工程中에 발생한 屑物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換價價値가 있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말하며, 有形의 物質이라도 換價價値가 없어 부패하는 것은 副産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工程中에 발생하는 屑物로서 다시 같은 製品의 原料로 再使用되는 것으로 期中에 발생한 부분은 副産物에 合算하지 아니하며 期初, 期末在庫分은 期初, 期末在工品에 合算 기재

㉔ 原料實使用量：製造投入量 + 期初在工量 - 期末在工量

⑤ 實際使用量을 조사하는 과정은 그 단계를 나누면 準備段階, 本調査段階, 終結段階로 구분된다. 進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檢討, 把握, 確認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㉑ 準備段階

㉒ 調査班의 編成

- 構成人員의 決定

㉓ 參考資料의 事前檢討

- 調査對象이 되는 原材料의 製品에 대한 特性, 規格區分, 用途, 製造工程 및 문헌을 검토하여 상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習得
- 原材料의 구입형태 및 產品의 판매현황 파악
- 還給實績과 소요량증명서 등의 내용 사전 검토로 조사중점부분 파악
- 國세청 보고 “生産收率” 등 관계자료에 의한 分析 및 조사중점 검토
- 소요량 과다책정 등 추정되는 要因 분석으로 조사방법을 구상

㉔ 調査日程決定

- 당해업체에 조사취지를 설명한 협조에 관한 公文 전달

㉕ 本調査段階

㉒ 당해업체의 一般現況을 파악하여 調査順序를 결정한다.

- 내부관리체계, 조직의 구성을 검토하여 相關부서 선택
- 제조공정도를 검토하고 원재료 및 제품 등의 生産관리실태에 따른 相關자료(전산시스템 포함)의 흐름圖 작성
- 원료 및 제품 등의 去來形態와 帳簿組織을 검토하여 제출요구서류를 결정
- 其他 特記事項을 檢討

㉓ 공정단계별 실제사용량의 確認資料를(요구) 취합하여 조사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原料別 受拂事項明細表의 作成>

㉔ 원재료 規格별로 기초재고량, 구입량, 자체생산량을 조사하여 원재료 총수량을 확인한 다음

(原料總量 = 期初在庫量 + 買入量 + 自體生産量)

㉔ 원재료 총수량에서 期末에 남은 在庫量과 원재료 상대로 판매하거나 실험실 등 생산목적이 아닌 自家消費한 양을 뺀 數量, 즉 제품별 製造에 投入한 原料使用量을 確認한 다음

(原料總量 - 期末在庫量 - 原狀態販賣量 - 自家消費量 = 原料使用量)

㉕ 期初在工品量(원료단위로 환산한 수치)을 調査하여 이를 原料使用量에 合한 후 期末在工品量(원료단위로 환산한 수치)을 뺀 數量이 調査對象期間中에 製品別 生産에 실제로 投入된 原材料數量(實投入量)이 된다.

(原料使用量 + 期初在工品量 - 期末在工品量 = 實際投入原料量)

〈製品別 受拂事項明細表의 作成〉

㉖ 제품별로 販賣된 양(內需 + 輸出)을 調査한 후, 제품이 中間原料가 되어 다음 工程의 製品을 生産하는 데 投入된 양과 實驗室 등 自家消費量을 調査하여 이를 전부 合한 數量을 製品出庫量으로 보고 (輸出量 + 內需量 + 다음 工程投入量 + 自體消費量 = 製品出庫量)

㉗ 製品出庫量에 期末에 남은 제품재고량을 合한 양에 期初에 넘어온 재고량을 뺀 수량이 當期製品生産량이 된다.

(製品出庫量 + 期末在庫量 - 期初在庫量 = 當期製品生産量)

〈副產物 受拂明細表의 作成〉

㉘ 副產物이 판매된 양과 자체에서 消費된 양을 확인하여 이를 合한 수량이 當期副產物出庫량이 되고,

(販賣量 + 自體消費量 = 當期副產物出庫量)

㉙ 當期出庫量에 期末在庫量을 合한 양에

期初에 넘어온 在庫量을 뺀 수량이 當期副產物發生量이 된다.

(當期出庫量 + 期末在庫量 - 期初在庫量 = 當期副產物發生量)

〈製品別 平均實際所要量 算出內譯表의 作成〉

㉚ 제품별 生産량에서 원재료별 實際投入量을 나누어 제품 1단위당 원재료 平均所要량을 算出한다.

$$\left(\frac{\text{製品別 生産量}}{\text{原材料實投入量}} = \text{原材料單位當 平均所要量} \right)$$

㉛ 副產物發生量을 副產物을 발생시킨 原材料의 實使用量으로 나누어 副產物發生比率를 算出한다.

$$\left(\frac{\text{副產物發生量}}{\text{副產物을 發生시킨 原材料實使用量}} = \text{副產物發生比率} \right)$$

㉜ 調査의 終結段階

㉜a 實際使用量 調査結果에 따른 綜合的인 報告書(복명서)를 작성한다.

- 調査對象業體 및 調査期間과 調査人員
- 調査된 實際使用量明細
- 調査品目別 問題點 등 특기사항

㉜b 調査結果에 대하여 本廳에 報告함으로써 그 調査가 終結된다.

㉜c 實際使用量調査時에 사용되는 書式은 별첨 書式을 사용한다. 다만, 電算資料를 使用할 수 있다.

- 製品別 平均實際所要量 申告書
- 製品別 受拂明細表
- 原料別 受拂明細表
- 副產物 受拂明細表
- 製品別 平均實際所要量 算出內譯表
- 製造工程 및 特記狀況表

3. 自體所要量計算書 作成制度

가. 制度實施背景

輸出業體는 外貨獲得用物品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所要量證明書を 權限있는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소요량증명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입 및 수출이행 사후관리에 사용되고 있고 무역금융과 관세 등의 환급의 용도에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로서는 기본적인 必須書類가 되므로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절차를 必然的으로 겪게 되는 業務가 되고 있다.

수출업체가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살펴보면, 發給申請具備書類를 준비한 뒤 근거자료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요량발급기관에 신청하고, 발급기관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에 따른 時間과 人力이 낭비되고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부담도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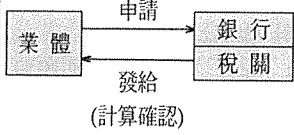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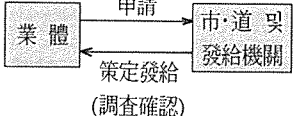
그러므로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에 업체가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로 고시와 대조·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補完하고자 업체 스스로가 所要量を 策定·管理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업체로 인정받아 지정된 업체는 업체 스스로가 계산한 所要量計算書로 所要量證明書와 같은 効力이 있도록 하는 『所要量自體管理企業制度』를 施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期待되는 效果로는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所要되는 人力 및 時間의 낭비와 부대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업체에 맞는 소요량을 책정하도록 함에 따라 告示된 基準所要량과 實際使用量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되는 問題點이 解消되며, 注意力不足이나 專門性的의 缺如로 발생하는 소요량증명서의 誤謬問題 등을 解消하게 되는 效果가 기대되고, 빠른 速度의 技術개발에 따른 損耗率의 下向趨勢에 迅速한 對處가 可能하게 되는 效果와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의 업무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수출신장에 따른 업무량증가에 대처하는 效果 등 連鎖的인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企業의 신의성실과 기업내부의 所要量管理體制가 요구되는 제도이므로 지정요건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요량책정 능력은 인정받기 어려우나 製品의 品質은 認定받고 있는 安定的인 企業에 대하여도 告示된 品目에 한하여 업체 스스로가 기준소요량에 따라 計算한 所要量計算書로 所要量證明書에 代身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기업을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요량증명서 대신에 기업 스스로 계산한 소요량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所要量策定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所要量自體管理企業과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으로 나누어진다.

所要量證明書制度	所要量計算書制度
○ 發給節次 및 發給機關 · 告示品目 	○ 發給節次 · 業體自體計算 作成 ○ 發給企業 · 所要量自體管理企業 - 所要量 策定·管理 · 所要量計算書 發給企業 - 基準所要量 適用
· 非告示品目 	

4. 所要量自體管理企業制度

수출업체가 生産하는 物品은 附加價値稅法 제35조, 所得稅法 제201조 제1항 및 法人稅法 제58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를 國稅청에 신고하게 된다. 生産收率을 計算하는 基準과 範圍는 對外무역법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所要량제도상의 所要 原材料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의 決定基準과는 다소 差異點은 있지만 損耗率을 計算하는 개념은 같은 것이므로 生産收率 및 原單位申告書를 작성하고 있는 신고품목에 대하여는 實質的인 所要量的 確認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業體中에서 原材料의 自體管理能力이 높은 일정수준 이상의 企業에 대하여는 企業 스스로가 基準量을 自體策定하여 作成한 所要量計算書로서 所要량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企業을 『所要量自體管理企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요약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所要量自體管理企業 指定資格要件

- (1) 前年度 國稅廳 生産收率比較表에 登載된 業體
- (2) 前年度 輸出通關額이 1千萬弗 以上인 業體

나. 所要量策定基準

- (1) 輸出品이 生産收率 申告品目일 경우에는 基準所要량 고시여부를 불문하고 1年單位로 산출한 平均實際所要量
- (2) 輸出品이 生産收率 未申告品目으로서 告示品目일 경우에는 基準所要量

다. 平均實際所要量 適用時期

- (1) 당해기업의 事業年度 終了後 3月이 經過한 때

라. 長 點

- (1) 人力, 時間 및 費用節減으로 수출업체의 行政的 支援效果

〈所要量自體管理企業制度 要約〉

輸出品	告示與否	原材料	所要量策定	適用時期	所要量確認者 (發給者)	所要量確認書類
生産輸出 申告品目	不問	生産收率申告 對象原材料 (主材料)	1年單位로 算出한 平均實際所要量	事業年度 終了後 3月이 經過한 때 輸出 또는 國內供給되는 物品	當該業體	所要量 計算書
		生産收率 未申告對象原材料(副材料)	〃	〃	〃	〃
生産輸出 未申告品目	告示	主材料 및 副材料	基準所要量	輸出免許日 國內供給日	當該業體	所要量 計算書
	非告示	〃	實際所要量 (單位所要量 策定)	〃	非告示品目の 所要量 發給機關	所要量 證明書

① 시·도 및 은행 등 발급기관에 왕복하는
時間 및 人力節減

② 발급기관의 所要量策定 및 確認節次에
따른 번거로움 解消

③ 발급수수료 및 왕복차량비 등 費用節減
(2) 기술개발 및 공정변경 등을 신속반영 가
능

기술개발 등에 따른 原材料 追加, 削除 및
所要量 變更의 신속반영 가능.

(3) 過多·過少還給發生 방지로 適正還給 維持
기준소요량제도의 단점인 업체간 기준량 차
이에 따른 過多·過少還給防止 및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된 기준소요량에 대한 精算不必要.

(4) 業體의 不滿解消와 行政節次 減少

過多·過少還給防止를 위한 실제소요량조사
등 정산절차에 따른 업체의 不便과 不滿이 解
消되고 追加還給 또는 追徵의 번거로운 行政
節次가 減少된다.

(5) 발급기관의 업무량 감소와 수출신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효과

① 발급기관의 業務量을 減少시켜 줌으로써
다른 업체의 기타 所要量策定 및 確認에 正確을
기할 수 있는 時間과 人力確保 可能

② 수출신장에 따른 所要量 발급업무량의
증가 추세에 대처하는 효과

마. 短 點

(1) 業體責任 加重

信義誠實이 요구되는 制度이므로 所要量策
定에 따른 業體責任負擔 發生

(2) 所要量策定 管理體制確保 부담

소요량의 自體策定이 可能하도록 企業內部的
시스템(전산 등) 構築

(3) 策定된 所要量의 確認行政 發生

所要量策定の 正確性 與否를 確認하는 制度
的裝置 必要

5.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制度

基準所要量이 告示된 물품을 수출한 수출업
체가 所要量證明書を 발급받는 행정절차로는
基準所要量에 따라 計算하여 소요량증명서발
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
래하는 外國換銀行의 長 또는 稅關長에게 소
요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게 되고, 발급기
관은 告示에 따라 計算하여 發給하는 節次가
되는바, 이미 基準이 定하여진 내용을 계산발
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人力이나 時間을 낭비하게 되는 불편한
절차란 점에서 이를 省略하고 소요량계산서로
告示內容과 對照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利用
도가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告示와 對照하게 되므로
아예 증명서를 發給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소요량의 確認은 製品의 性質이나 等級 등 여
러가지 要素에 따라 소요원재료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구분하여야 하고, 원재료의 混用比率이나
單位實量이 確認되어야 고시에 맞는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업체 스스로가 작성한 소
요량계산서를 착오로 수정하게 되면 당초의
내용으로 작성한 還給申請內容까지도 再作成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어 있는 품목
으로서 品質面이나 標準化面에서 認定을 받는
기업이거나 일정한 要件을 갖추고 있어 원재
료의 사후관리를 自律的으로 할 수 있는 企業
등은 製品이 安定性이 있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되므로 스스로 기준소요량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작성한 所要量計算書を 소요량증명서 대신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업체는 공업진흥청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業體中에서 指定하

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指定된 業體를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이라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 指定要件

- (1) 公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KS 업체
- (2) 公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 업체
- (3)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세계일류화상품 생산업체
-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2-15조에 의거 선정된 사후관리 자율관리기업 및 동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나.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의 取消要件

- (1) 파산 등으로 자체발급이 불가능할 때
-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3) 1년이상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

다. 所要量策定基準

- (1) 기준소요량

라. 長 點

- (1) 人力, 時間 및 費用節減으로 輸出業體의 行政的支援 效果
 - ① 시·도 및 은행 등 발급기관에 왕복하는 時間 및 人力節減
 - ② 발급기관의 소요량계산을 확인하는 行政 節次 省略
 - ③ 발급수수료 및 왕복차량비 등 費用節減
- (2) 發給機關의 업무량 감소와 수출신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효과
 - ① 발급기관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다른 업체의 소요량발급업무에 正確性을 기할 수 있는 時間과 人力確保 可能
 - ② 輸出伸張에 따른 소요량발급업무량 증가 추세에 대처되는 效果

마. 短 點

- (1) 證明書制度에서 발생하는 基準所要量의 不 適正問題 常存
 - ①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소요량에 대한 實際使用量의 調査節次와 精算節次問題 常存
 - ② 원재료의 규격, 혼용비율, 단위실량 등과 計算方法의 再確認問題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制度 要約〉

輸出品	原材料	所要量策定	適用時期	所要量確認者 (發給者)	所要量 確認書類
고 시 품 목	주재료 및 부재료	기준소요량	수출면허일 국내공급일	당해업체	소요량계산서
비고시품목	주재료 및 부재료	실제소요량 (단위소요량 책정)	수출면허일 국내공급일	비고시소요량 발급기관	소요량증명서

〈다음호에 계속〉